

2017 년 직분자 교육(4 강)

직분에 대한 이해

I. 서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자들의 모임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의 무리입니다.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 교회마다 직분자를 세워 조직(당회, 제직회, 운영위원회 등)을 이루어 교회를 봉사하며 섬김으로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장로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전도사(강도사). 서리집사를 직분자(제직)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안수 받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를 ‘항존직’이라고 부르며, 그 외의 직분자인 전도사(강도사)나 서리집사를 ‘임시직’이라고 부릅니다. (권사는 안수받지 않는 직분이지만 항존직으로 여김)

II. 교회와 직분

1. 직분의 의의

교회의 직분은 사도 시대부터 요구되고 상속되어 온 교회의 제도(영적인 질서)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직분자는 ‘내적소명과 외적소명’을 요구합니다. ‘내적소명’이란 개인 성도가 특정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외적 소명’이란 교회의 회중이 그를 직분자로 인정하고 부르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가 되게 하실 때, 그 자신이 느끼는 바 내적인 소명을 교회 회중이 선출하는 방법의 외적

인 소명을 통해 인쳐주는 방식(안수)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직분으로 부르십니다.

마 3:16-17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막 1:10-11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눅 3:22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2. 직분자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외에 달리 교회의 주인이 없음을 선포해야...

우리가 신앙고백하는 것처럼, 교회의 주인은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주께서 친히 피로 값 주고 사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신 그리스도 이외에, 어느 누구도 주인 행세를 하거나 대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그 분의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알아가며, 그의 요구에 순종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3. 직분에 대한 오해

직분은 교회의 필수요건입니다. 전형적인 직분에는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외에 부수적인 임시직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강도사,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 등입니다. 이것은 교회 가운데 특별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구성된 임시적 기관에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두는 일종의 직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내 다양한 기관들은 전도사업이나 구제사업 혹은 교육, 친목등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설립된 기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직분은 개인에게 주어진 교회 내 계급(혹은 명예, 신앙의 척도)인가? 직분이 마치 계급제도(수직적 직분 구조)처럼 인식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이지 못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장로, 집사 직분을 맡고 있던 성도가 목사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면, 목사 직분을 감당하던 성도가 장로나 집사직분을 행하게 된다 해도, 이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안수)를 항존직으로 말하는데, 종신직과 항존직을 잘 구분하여 이해하여야 합니다□항존직이란 역사 가운데 항시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직분이라는 뜻이며, 한번 직분을 받은 자가 평생 종신직이라는 의미와는 다른 것입니다.

Ⅲ. 교회 직분의 종류와 역할

1. 교회 직분의 종류

교회의 직분에는 계급적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지만 직분과 직분 사이에는 매우 분명한 경계를 가지면서 동시에 깊은 연관성(통일성)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어느 직분이 더 권위 있고 핵심적인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은 잘 이해해야 할 문제인데, 즉 어느 직분이 상하거나 변질하게 되면 가장 치명적이 되느냐? 하는 점을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들은 핵심적인 일을 함으로써, 그것을 통해 인정을 받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자기 삶을 의미화(?)하려는 욕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온전히 교회에 속하는 것이며 개인의 의사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개혁교회(Reformed Church)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목사, 교사, 장로, 집사 등 네 항존직분을 두고 있으나 장로교에서는 목사, 장로, 집사 등 세 직분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직분을 목사직분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1) 목사와 교사

① 목사

목사는 공 예배에서의 말씀선포와 성례집행, 권징사역, 축도를 감당하는 직분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목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입니다.

② 교사(신학교수)

교사직분자란 오늘날 신학교수들입니다. 장로교회에서는 교사직분을 독립된 직분으로 구분하지 않고 목사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2) 장로

장로는 목사와 함께 교회의 감독을 맡은 직분자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시자라는 말이 아니라 선한 치리자라는 말을 포함합니다. 장로의 두 가지 중요한 감독 직무는 첫째, 공 예배시 이루어지는 목사의 설교에 책임 있게 참여 함으로써 관찰하는 일과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사랑으로 감독하는 일입니다. 또 다른 장로의 직무는 성도들을 심방하는 일입니다. 장로는 교인을 심방하여, 교회를 한 몸으로 세워가야 할 교우들이 목사의 설교에 온전히 잘 참여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지, 그리고 가정생활과 자녀양육에서도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지 확인하며 독려하는 것입니다.

(3) 집사

집사직분은 몸 된 교회를 섬김으로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중한 직분입니다. 집사직분은 교회의 재정과 함께 구제사역에 관한 문제 등을 담당합니다. 집사는 역시 목사, 장로와 연관되는 직분으로써 장로들의 심방을 통해 구제의 필요성이 있는 성도들에 관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기본적인 생활형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4) 그 외 특이한 부수적 임시직분(권사와 서리집사)
 특이한 임시직분이란 교회가 아직 정상적인 직분을 둘 수 없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두지만, 교회가 장성하여 항존적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직분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권사, 강도사, 전도사 등이며, 임시직분으로는 서리집사입니다. .

서리집사는 형편상 임시로 제정한 직분인데, 항존직으로서 장립집사(안수)를 세울만한 형편이 되지 않은 교회에서, 일시적으로(일년직으로) 그 직무를 맡기기 위해 있던 직분이 서리집사입니다.

IV. 교회의 각 직분회와 그 기능

교회에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모임으로 대개의 경우 당회와 제직회가 있으며, 전체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당회는 목사, 장로들로 구성된 모임이고, 제직회는 당회원들을 포함한 집사들과 다른 임시직분자들이 포함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권위는 당회가 가지지만 재정과 교회적 구제에 관련된 권위는 집사회가, 그리고 교회가 위임한 일들에 대한 의결권은 제직회가, 그리고 일반적인 보고와 승인에 대해서는 전체 교인들의 회인 공동의회(등록교우 세례교인의 정회원)가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1) 당회

당회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분야를 맡은 직분자들인

목사와 장로로 구성됩니다. 당회의 중요결정사항을 제직회와 공동의회에 공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승인을 받습니다.

(2) 집사회

집사회는 교회의 재정과 교회적 구제에 관련된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집사회는 모든 의결사항과 실천사항을 제직회에 보고하여 확인과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당회원들은 당연히 제직회에 속해 있으므로 제직회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며 감독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3) 제직회

제직회는 직분자들의 전체적 대의기관입니다. 그 회에서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등 모든 직분자들이 함께 모여 영적인 일과 더불어 일반적인 교회의 형편들을 나누며 교회의 행사들과 제반 사항들에 대한 논의하며 의결하게 됩니다.

(4) 공동의회

공동의회는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입교인들(등록교우 세례교인)이 공동의회 회원이 되어 질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성도로서 갖추어야 할 모든 의무와 책임을 감당합니다.